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83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이원택·김종민·이병진

송옥주 · 서삼석 · 이성윤

이춘석 • 김윤덕 • 윤준병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산업·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 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4호 중 "농업"을 "농ㆍ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11.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4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 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

인의 지정

-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
- 5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 57.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ㆍ 허가

제31조제2항제1호 중 "농업용수"를 "농ㆍ어업용수"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농업"을 "농업 · 어업"으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6호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농·어업용지조성 및 농·어업기반시설 관리"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지조성"을 "농·어업용지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용지"를 "농·어업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지"를 "농·어업용지"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업기반시설등"을 "농·어업기반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업기반시설"로, "농업기반시설등"을 "농·어업기반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기반시설등"을 각각 "농·어업기반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농업기반시설등"을 각각 "농·어업기반시설등"을 각각 "농·어업기반시설등"을 각각 "농·어업기반시설등"을 각각

제56조의 제목 중 "농업기반시설등"을 "농·어업기반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기반시설등"을 "농·어업기반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기반시설등"으로, "농업용지"를 "농·어업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	4
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u>농업</u> , 산업·연구, 관광·레저	<u>농·어업</u>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①
개발계획이 승인・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
	은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식
	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신 설>

- ② (생략)
-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 저 관리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 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 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 1. ~ 7. (생략)
 - ③ (생략)
-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 략)
 -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 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 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u>변경</u>
11.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
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세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7

부장관-----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저 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 에 따른 허가 · 인가 · 신고 · 결 정 · 지정 · 면허 · 협의 · 동의 · 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 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53. (생략) <신 설>

<신 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1. ~ 53. (현행과 같음)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
설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신 설>

<신 설>

- ② ~ ⑥ (생 략)
-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에서 제외한다.
 -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 로 사용하는 자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 략)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 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 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 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 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

- 5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 14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 흥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의 허가
- 57.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2)	 	

- 용수-----
- 2.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 <u>농업</u>	• 어업

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 ⑧ (생 략)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② (생략)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 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u>농림</u> 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농림</u>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u> 부장관</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

- 1. 2. (생략)
-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 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 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 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 4. 5. (생략)
-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 행 ·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 하다.
- 7. · 8. (생략)
- ②·③ (생 략)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4조(<u>농ㆍ어업용지조성</u> 등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 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

1.・2. (현행과 같음)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4. • 5. (현행과 같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7.・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7장 <u>농·어업용지조성 및 농·</u>
어업기반시설 관리
15/2/노 시어 9 기 고서 드레

대한 특례) ① <u>농림축산식품부</u>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용지-----

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 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 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 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 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u>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u>농지</u> 등의 구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u>농업기반시설등</u>의 유지관 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u> 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지역의 <u>농업기반시설</u>·방조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u>농업기반시설등</u>"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새만 금사업지역의 <u>농업기반시설등</u> 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
<u>.</u>
② <u>농림축산식품</u>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u> 농 • 어업용지</u>
제55조(<u>농·어업기반시설등</u> 의 유
제55소(<u>동·어업기반시설등</u> 의 유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u>농·어업기반시설</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u>농·어업기반시설</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u>농·어업기반시설</u> <u>농·어업기반시설등</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u>농·어업기반시설</u> <u>농·어업기반시설등</u> <u>농·어업기반시설등</u>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u>농·어업기반시설</u> <u>농·어업기반시설등</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u> 해양수산부장관
지관리 의무) ① <u>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 <u>농·어업기반시설</u> <u>농·어업기반시설등</u> <u>농·어업기반시설등</u>

법」	에	따른	ĺ	한국	농어	촌공	사
(०) ह	하 "	한국는	5°	촌	당사'	'라	한
다)	등	대통	궝i	령으	로	정호	누는
공공	기관	을	<u>농</u>	업기	반시	설등	크
관리	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라 <u>농업기반시설</u> 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 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u>농업</u> 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u>농업기반시설등</u>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위
- 제56조(<u>농업기반시설등</u>의 유지관 리재원)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u> 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u>농업기</u> 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 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u>농림축</u>

<u>농 • 어업기반시설등</u>
③ <u>농·어업기반</u>
<u>시설등</u>
<u>'</u>
· 어업기반시설등
1. • 2. (현행과 같음)
3 <u>농·어업기반시설등</u>
제56조(<u>농·어업기반시설등</u> 의 유
지관리재원) ① <u>농림축산식품</u>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u>농·어업기</u>
<u>반시설등</u>
1 <u>농립축</u>

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지・건물 등의 임대료부장관------

- 2. · 3. (생략)
- ② (생략)
-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u> 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 기한 수익사업) ① <u>농림축산식품</u> 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u>농업용지</u>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 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 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부장관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반시설등
 레드7고 / ㅇ 키 키 키 케 이 _ 미 라 ㅇ _ 이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
한 수익사업) ① <u>농림축산식품</u>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어업기반시설등</u>
농·어업용지
<u>.</u>
② <u>농</u>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
<u>-11 0 1 12 1 0 12</u>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